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장길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께 지난 2월 5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‘제안설명’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,

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도시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람객 및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교통 혼잡, 불법주차,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공원이 위치한 자치구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이에 본 의원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에 규정되어 있는 요금감면 조항에 도시공원이 위치한 자치구 주민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하여, 해당 공원이 위치한 자치구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고자 합니다.

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도시공원의 요금 감면 조항에 주민등록표상 해당 공원이 위치한 자치구 주민에 대한 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